

1. 개정이유

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 수산자원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정비(안 제41조 신설)

-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산자원공단*이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**를 마련

* 공단은 '21년에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(통계청) 받아 조사를 실시중으로 전문성 등 역량 확보

** 당초 : 위임(수과원) → 정비 : 위탁(한국수산자원공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'23.06.20.~07.31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해양수산부령 제 호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(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) 법 제39조제2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”란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1조(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) 법 제39조 제2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”란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.</u>